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연구

주 용 이*

目 次

I. 서 론	V. 미국에서 집단소송의 기여와 남용
II. 미국 집단소송의 연혁	그리고 시사점
III. 연방법원에서의 집단소송	VI. 결 론
IV. 주법원에서의 집단소송	

I. 서 론

미국은 연방과 주 그리고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상호 협조하여 운영되는 연방제(federalism) 국가이다. 연방법원에서의 집단소송은 연방 실체법에 근거하여 연방에 적용되는 절차법에 따라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주법원은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주의 실체법에 근거하여 주의 절차법에 따라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다만 해상법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주법원도 연방 실체법을 근거로 주의 절차법에 따라 집단소송을 진행한다.¹⁾

집단소송은 동일한 유형의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 당사자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자

■ 투고일자 : 2023년 11월 11일, 심사일자 : 2023년 12월 8일, 게재확정일자 : 2023년 12월 21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문박사과정

1) 이세인, “미국집단소송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94호(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196면.

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구하고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 구성원을 구속하는 영미법 국가에서 운영되는 특유의 소송 방법이다.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집단을 대변하는 단체가 소송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가해 당사자의 행위의 부작위를 구하는 대륙법 국가의 단체소송 등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나 집단을 대표하는 구성원이 소송을 청구하는 영미법계 국가의 집단소송제도와는 동일하지 않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집단소송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환경피해, 인종차별, 반독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변호인은 해당 판결의 결과에 따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결과를 보이므로 소위 민간 법무장관(private attorneys' general)의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판결 승소에 따라 집단 구성원 각자가 받는 배상은 소액이지만 집단 전체로 보면 소송금액이 거액이어서 큰금액의 변호사 수입료에 매혹되어 기업이 정신으로 소송을 남발하여 기업 운영에 지장을 준다는 집단소송에 대한 우려의 입장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II장에서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의 연혁을 연방과 주를 나누어서 살펴본다. III장에서 연방법원에서의 집단소송을, IV장에서 주법원에서의 집단소송을 검토한다. V장에서 미국에서 집단소송의 기여와 남용 그리고 시사점을 살펴본다. VI장에서는 결론으로 집단소송을 우리나라에 도입 시 시사점을 정리한다.

II. 미국 집단소송의 연혁

1. 연방법원 집단소송 연혁

미국에서 연방 집단소송 규칙은 1842년에 형평법 규칙 제48조로 성문화되었고 형평법 소송절차에만 적용되었다.²⁾ 형평법 규칙 제48조는 다수 당사자가 관여하는 소송에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참여할 필요 없이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

2) Robert H. Klonoff, Class Actions and Other Multi-Party Litigation in a Nutshell, West Academic Publishing, 2021, p.25.

다.³⁾ 그러나 동 규칙은 해당 소송의 판결이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고 각 당사자는 소송결과에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구속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⁴⁾ 1912년에 형평법 규칙 제48조는 형평법 규칙 제38조로 대체되었고 제38조도 형평법 소송절차에만 적용되었다. 제48조는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소송결과가 구속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소송 결과의 구속력 여부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다.⁵⁾

1938년에 연방대법원은 연방법원에 적용되는 보통법(rules of law)과 형평법(rules of equity)을 통합한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하 ‘연방규칙’)을 공포하였고, 제23조에는 집단소송 관련 규정이 기술되었다.⁶⁾ 연방규칙 제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보통법과 형평법 절차 모두에서 집단소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⁷⁾ 연방규칙 제23조는 1938년에 전면 개정되었고 그 이후 대체로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⁸⁾ 개정 내용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제외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구성원들이 판결에 구속되도록 한 것이다.⁹⁾ 1938년에 개정된 연방규칙 제23조가 많은 점에서 현행 연방규칙 제23조와 동일하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행 연방규칙에 이르렀다.¹⁰⁾

2005년에 연방의회는 집단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고 주법원에서의 집단소송 증가를 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공평법(Class Action Fairness Act)을 제정하였다.¹¹⁾ 집단소송공평법은 2가지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는 여러 주에 제기되는 다주집단소송(multistate class action)에 대한 연방법원의 관할권이고, 두 번째는 연방법원에서의 다양한 유형의 소송합의와 관련된다.¹²⁾ 첫째, 다주집단소송에 대한 연방지방법원의 전속 관할

3) Ibid.

4) Ibid.. p.26.

5) Ibid.

6) Robert H. Klonoff, Class Actions and Other Multi-Party Litigation: Cases and Materials,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p.19.

7) Robert H. Klonoff(2021), op. cit., p.26.

8) Robert H. Klonoff(2017), op. cit., p.23.

9) 이세인, 앞의 논문, 194면.

10) Robert H. Klonoff(2021), op. cit., p.30.

11) 이세인, 앞의 논문, 204면.

12) Robert H. Klonoff(2021), op. cit., p.35.

권을 확대하였다. 둘째, 연방지방법원에서의 집단소송합의를 다루는데, 그 내용은 집단 변호인의 쿠폰 합의와 순손실 합의 제한, 법원과 근접 거리에 거주하는 집단소송 구성원에 대한 더 많은 보상 금지, 법원담당자에게 제안된 합의 조건에 대한 고지 등이다.¹³⁾

2. 주법원 집단소송 연혁

연방법원에서 형평법 제38조와 이를 대체한 형평법 제48조가 집단소송절차에 적용되던 때에 주법원에서의 집단소송은 각 주의 형평법 규칙에 따라 수행되었다.¹⁴⁾ 이후 연방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에서도 보통법과 형평법의 통합이 이루어졌다.¹⁵⁾ 1976년에 집단소송 모델법인 모범집단소송규칙(Model Class Action Rule)이 통일 법제 위원회(The Uniform Law Commission)에서 만들어졌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이 모델법을 수정하거나 변형하여 만든 집단소송 법규를 가지고 있고, 현재는 미시시피주와 버지니아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각 주의 민사소송법규 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가지고 있다.¹⁶⁾

III. 연방법원에서의 집단소송

1. 연방법원에서 집단소송을 규율하는 절차법

연방법원에서의 집단소송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실체법을 근거로 제기되고 그 절차는 민사소송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법원규칙인 연방규칙 제23조와 주법원에서의 집단소송 증가를 견제할 목적으로 초심관할권(original jurisdiction) 확대 등을 규정하여 2005. 2월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집단소송에 대한 집단소송공평법(Class Action Fairness Act)에 의해 규율된다.¹⁷⁾ 연방법원에서 집단소송으로 다루어진 분야는 증권, 노동과 고용, 소비자, 근로복지, 인권, 채무상환, 독점금지, 상사, 집단 피해 불법행위 등 다양하며 제기된 다수의 집단소송이 합의로 종결된다.¹⁸⁾

13) Robert H. Klonoff(2021), op. cit., p.36.

14) Robert H. Klonoff(2017), op. cit., p.19.

15) 이세인, 앞의 논문, 196면.

16) 이세인, 앞의 논문, 196-197면.

17) 이세인, 앞의 논문, 194-195면, 204면.

2. 연방법원에서의 집단소송 허가요건

(1) 연방법원 집단소송 허가요건의 개요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집단소송 허가요건은 연방규칙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a)항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적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소송유지요건인 동조 (b)항에 규정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더불어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된 묵시적 요건 3가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연방법원 집단소송 필수요건

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집단소송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건은 다수성(numerosity), 공통성(commonality), 전형성(typicality), 대표의 적절성(adequacy of representation) 4가지이다.¹⁸⁾ 동 집단소송 필수요건은 연방규칙 제23조(a)에 기술되어 있으며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다. 즉 해당 소송이 연방법원 집단소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집단구성원의 수가 너무 많아 공동소송이 불가능하고(동 규칙 제23조(a)(1)), 두 번째로 집단에 공통된 법률적 또는 사실적 쟁점이 있어야 하며(동 규칙 제23조(a)(1)), 세 번째로 대표당사자의 청구와 방어가 전형적인 집단의 청구와 방어여야 하고(동 규칙 제23조(a)(2)), 네 번째로 대표당사자가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동 규칙 제23조(a)(2)).

(3) 연방법원 집단소송 유형

1) 연방법원 집단소송 유지요건

연방법원에 제기되는 집단소송이 연방규칙 제23조(b)에 기술된 위 필수요건 4가지를 충족하고 연방규칙 제23조(b)에 규정된 3가지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집단소송으로 유지될 수 있다. 제23조(b)는 집단소송 유형을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제23조(b)항의 3

18) Brian T. Fitzpatrick, "An Empirical Study of Class Action Settlements and Their Fee Awards",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7(4), 2010, p.818.; 이세인, 앞의 논문, 194면.

19) 최정식, "증권집단소송에서 부실표시의 중요성의 소송허가요건해당성에 관한 한국과 미국 법제의 비교연구 - 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마4027 결정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통권 제44호 (한국증권법학회), 2018, 282면.

가지 범주 중 첫 번째 제23조(b)(1) 범주는 침해예방집단소송(class action for avoiding prejudice)에 해당하며, 다시 제23조(b)(1)(A)와 제23조(b)(1)(B)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두 번째 제23조(b)(2) 범주는 금지청구 또는 부작위위법확인 집단소송(class action for injunctive or declarative relief), 세 번째 제23조(b)(3) 범주는 손해배상청구집단소송(class action for monetary relief)으로 나누어져 총 4가지 유형에 해당한다.²⁰⁾

2) 침해예방집단소송

(가) 침해예방집단소송의 두 유형

연방규칙 23조(b)(1)에 규정된 침해예방집단소송은 집단 구성원이 개별로 소송을 진행하면 집단소송 상대방에게 모순된 판결이 내려지거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집단소송 유형으로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나) 침해예방집단소송 A유형

집단 구성원이 개별로 소송을 진행하면 모순되거나 다양한 판결이 내려져 집단소송 상대방에게 양립할 수 없는 행위기준을 부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예방집단소송 A유형에 해당한다(연방규칙 23조(b)(1)(A)). 침해예방집단소송 A유형의 경우 원고는 집단소송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가 여러 개의 개별소송에서 모순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집단소송의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소송은 환경집단소송 등에 적용되었다.²¹⁾

(다) 침해예방집단소송 B유형

집단 구성원이 개별로 소송을 진행하면 해당 판결로 인해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의 이익의 향방이 현실적으로 결정되거나 그들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손상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예방집단소송 B유형에 해당한다(연방규칙 23조(b)(1)(B)). 보상할 재원이 한정되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특정 집단에 대해 보상하고 나면 재원이 소진되어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보상이 어려운 한정기금사건 등에 적용되며, 동일한 모든 피해자 집단에 대해 1회 소송으로 보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 침해예방집단소송 B유형이 활용될 수 있다.²²⁾

20) 최정식, 앞의 논문, 282-284면.

21) 최정식, 앞의 논문, 283면.

3) 금지청구 또는 부작위위법확인 집단소송

집단의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가 원고인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근거에 따라 행동하거나 행동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종국적인 금지명령(final injunctive relief)이나 상응하는 확인판결(declarative relief, 즉 부작위위법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금지청구 또는 부작위위법확인 집단소송 유형에 해당한다(연방규칙 제23조(b)(2)). 이 집단소송은 허가결정의 통지가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구성원에게 제외신고권(opt-out)이 주어지지 않으나 법원은 재량으로 통지와 제외신고를 명령할 수도 있다.²³⁾

4) 손해배상청구집단소송

손해배상청구집단소송은 집단 구성원이 피고에 의하여 동일한 종류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되는 집단소송 유형이다.²⁴⁾ 이 유형은 집단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법률 또는 사실적 쟁점이 개별 구성원들의 쟁점을 압도하여야(predominate) 하고, 집단소송이 그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다른 판결방법에 비해 우월한(superior) 경우 허용된다(연방규칙 제23조(b)(3)). 법원은 집단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성원들이 얻는 이익,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이미 제기된 소송의 정도와 성격, 특정한 법원에 소송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집단소송으로 진행 시 발생할 어려움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집단소송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연방규칙 제23조(b)(3)(A)-(D))

(4) 법원의 관리권

연방규칙은 법원이 집단소송 인가 시 통지(notice)(연방규칙 제23조(e)(1)), 제외신고(opt-out)(동 규칙 제23조(c)(3)(B)), 변호인 임명(동 규칙 제23조(c))과 수임료 책정(동 규칙 제23조(h))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인가 명령

연방규칙 제23조(c)는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관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²⁵⁾ 연방

22) 최정식, 앞의 논문, 283면.

23) 최정식, 앞의 논문, 284면.

24) 최정식, 앞의 논문, 284면.

25) 오시영, 미국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 법률저널, 2015, 26면.

법원에 제기되는 집단소송이 연방규칙 제23조 (a)항의 필수요건(prerequisites)과 (b)항의 소송유지요건(types of class actions)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법원은 인가 명령(certification order)을 내리는데, 그 내용에는 집단 정의, 통지(notice), 제외신고(opt-out), 특정 사안 집단(issues classes), 하부집단(subclasses) 등이 포함된다(연방규칙 제23조(c)). 법원의 집단소송 인가 여부 명령은 집단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소를 당한 후 신속하게 내려져야 하고, 집단소송 인가 명령 시 법원은 집단, 집단의 청구 취지, 쟁점, 상대방 당사자 변론 등을 명시해야 하고, 집단번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집단소송 인가 여부는 최종판결 전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연방규칙 제23조(c)(1)).

2) 통지(notice)

법원은 침해예방집단소송(연방규칙 제23조(b)(1))과 금지청구 또는 부작위위법확인 집단소송(연방규칙 제23조(b)(2)) 인가 후 집단 구성원에게 통지할 수 있고, 이는 법원이 가진 재량권이므로 필수 요건은 아니다(연방규칙 제23조(b)(2)(A)).²⁶⁾

손해배상청구집단소송(연방규칙 제23조(b)(3))의 경우에는 법원은 인가 후 집단 구성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최선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연방규칙 제23조(c)(2)(B)).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구성원에게는 개별로 통지할 수 있고, 우편,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통지에는 소송의 본질, 인가된 집단 소송의 집단 정의, 집단의 청구 취지, 쟁점, 상대방 당사자 변론,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구성원, 집단 구성원 제외 신고권(opt-out), 제외 신고 시기와 방법, 집단 소송 판결의 구속력 등이 이해하기 쉽게 분명한 말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되어야 한다(연방규칙 제23조(c)(2)(B)).

3) 제외신고(opt-out)

손해배상청구집단소송(연방규칙 제23조(b)(3))의 경우 법원은 집단 구성원에게 통지 대상과 제외신고 가능 여부를 명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즉 손해배상청구집단소송은 통지와 제외신고가 필수이지만 침해예방집단소송과 금지청구 또는 부작위위법확인 집단소송에서는 통지가 법원의 재량으로 필수가 아니다.²⁷⁾

26) 최정식, 앞의 논문, 286면; 오시영, 앞의 책, 26면.

27) 최정식, 앞의 논문, 284면.

4) 합의안 확인과 승인

집단소송 합의안이 집단 구성원을 구속할 경우 법원은 심의(hearing) 절차를 거쳐 그 합의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때 고려사항으로는 집단대표자와 집단대리인이 집단을 적절하게 대표하는지 여부, 합의안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되었는지 여부, 위자료(relief)가 적절한지 여부, 합의안이 집단구성원 서로를 비교하여 공정한지 여부 등이 있다(연방규칙 제23조(e)(2)). 위자료 적절성 여부 판단 시 법원은 비용, 위험 및 재판과 항소 지연, 위자료 청구 처리 방법을 포함한 지급 방법의 효과성, 변호사 수임료 지급 시기를 포함한 보상 조건, 합의안에서 확인이 요구되는 합의 내용 등을 검토한다(연방규칙 제23조(e)(2)(C)). 그리고 합의를 구하는 당사자는 법원의 합의 내용 확인을 위해 서면으로 합의안을 제출해야 한다(연방규칙 제23조(e)(3)).

5) 변호인 임명과 수임료 책정

법원은 의회 제정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인가한 집단소송의 변호인을 임명하여야 한다(연방규칙 제23조(g)). 변호인 임명 시 법원은 잠재적인 소송 청구 취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변호인이 한 일, 집단소송, 다른 복잡한 소송 및 소송에서 주장되는 유형의 청구 취지를 다룬 경험,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변호인의 지식 및 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변호인이 활용할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은 소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때 청구금액과 법령, 규칙 기타 청구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연방규칙 제54조(d)(2)).

(5)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

집단소송은 형평법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보통법과 형평법의 통합 이후 집단소송을 배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논란이 있었다. 1970년 *Ross v. Bernhard*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판례에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두하게 된 소송의 형식이나 절차적 장치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법적청구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배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²⁸⁾

28) 이세인, 앞의 논문, 201면.

IV. 주법원에서의 집단소송

1. 연방규칙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

연방법원에서 다양한 실체법을 근거로 연방규칙 제23조에 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유사하게 현재 미시시피주와 버지니아주를 제외한 모든 주의 각 주법원은 각 주의 실체법을 근거로 각 주의 민사소송법규 내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 규정에 따라 집단소송을 진행한다.²⁹⁾ 그러나 해사 관련 법률 등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반드시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외에는 주법원에서 연방의회제정 법률(federal statutes)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³⁰⁾

주법원에 제기되는 집단소송에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연방 헌법 수정조항 제7조는 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므로 *Ross v. Bernhard* 판결은 주법원을 구속하지 않게 되고 주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각 주법에 달려 있다.³¹⁾

2. 주 민사소송법규 내 집단소송 절차규정을 두지 않은 주의 경우

미시시피주는 형평법 법원에 제기되는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USF & G Ins. Co. of Mississippi v. Walls* 판결에서 미시시피주 대법원은 미시시피주에 집단소송을 허락하는 절차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집단소송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판시하였고, 주법원에서의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미시시피주 민사소송규칙 제23조 개정신청을 2018. 5. 17. 미시시피주 대법원이 기각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시시피주에는 집단소송 관련 절차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³²⁾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2012년 *Casey v. Merck & Co.* 판결에서 버지니아주 법체계는 집단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³³⁾ 현재 버지니아주도 집단소송 관련 절차법규

29) 이세인, 앞의 논문, 196면,

30) 이세인, 앞의 논문, 196면,

31) Ann M. Scarlet, "Jury Trial Disparities between Class Actions and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s in State Courts", *Oklahoma Law Review*, 72(2), 2020, p.296.

32) 이세인 앞의 논문, 197면.

33) 이세인 앞의 논문, 198면.

가 없으나 버지니아주의 다수청구인 소송법(The Multiple Claimant Litigation Act)에 따라 6개 이상의 민사 소송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³⁴⁾

V. 미국에서 집단소송의 기여와 남소 그리고 시사점

1. 외부 부정적 효과의 내부화

다수의 집단 구성원 전체로 보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만 구성원 개인은 소액의 피해를 입게 되는 분쟁에서 개별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배상을 받는 경우 자신이 들인 비용 대비 보상이 작아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분쟁에서 개별 구성원에게 돌아갈 보상은 작으나 집단전체에 대한 총 보상금액은 커서 변호사의 집단소송 참여 유인이 있게 되고 가해 당사자의 행위에 징벌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외부 부정적 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게 되고 장차 발생할 사회적 손해도 미리 막게 되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³⁵⁾

2. 집단소송에 대한 비판

미국에서 집단소송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을 막론하고 집단피해 불법행위(mass tort), 주주대표소송(shareholder derivatives suit), 석면피해, 제조물책임, 기업부정(corporate misbehavior), 신인의무(fiduciary duty) 위반, 고용차별, 소비자보호, 노동과 고용, 근로복지, 인권, 채무상환, 독점금지, 상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쿠폰화해(coupon settlements), 협박화해(blackmail settlements), 포럼쇼핑(forum shopping), 청구근거가 빈약한 증권집단소송의 남발, 소위 직업적 원고(professional plaintiff) 등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에 대한 강한 비판론이 형성되었다.³⁶⁾

34) 이세인 앞의 논문, 198면.

35) 전원열,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및 금전배상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84호(한국법학원), 2021, 180면.

36) 주진열, “최근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 국내 일반집단소송 법규 제정에 대한 시사점

국내 집단소송 관련법으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4년 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1980년 처음 제정된 소비자기본법이 2009. 9. 27. 전면 개정되어 소비자보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이때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률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도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관련 규정이 기술되어 있다. 2011. 3. 21.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2011. 9. 30.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침해를 중지 금지시키기 위한 개인정보단체소송이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전면적인 집단소송제도 마련을 위한 법무부의 2020. 9. 28.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 등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³⁷⁾ 집단소송제도는 외부 부정적 효과를 내부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반면 소의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으므로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리하면, 국내에서의 집단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그리고 유사한 제도인 단체소송은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통해 제한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고 일반적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논의도 있으나 외부 부정적 효과의 내부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남소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VI. 결 론

미국의 집단소송은 연방과 주가 협력하여 운영되는 연방제라는 미국의 특성으로 인해 연방에서의 집단소송과 주에서의 집단소송이 가능하고, 소송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부정적 효과의 내부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소의 남발로 인한 기업활

제29집 제4호(한양대 법학연구소), 2012, 571면.

37) 현낙희,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 민사소송 제26권 1호(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22, 390면.

동 위축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국내에서의 집단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그리고 유사한 제도인 단체소송은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통해 제한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고, 일반적인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논의도 있으나 외부 부정적 효과의 내부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남소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오시영, 미국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 법률저널, 2015.
- 이세인, “미국집단소송제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94호(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전원열,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및 금전배상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84호(한국법학원), 2021.
- 주진열, “최근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29집 제4호(한양대 법학연구소), 2012.
- 최정식, “증권집단소송에서 부실표시의 중요성의 소송허가요건해당성에 관한 한국과 미국 법제의 비교연구 - 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마4027 결정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통권 제44호(한국증권법학회), 2018.
- 현낙희,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달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 민사소송 제26권 1호(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22.
- Fitzpatrick, Brian T., “An Empirical Study of Class Action Settlements and Their Fee Awards”,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7(4), 2010.
- Klonoff, Robert H., Class Actions and Other Multi-Party Litigation: Cases and Materials, West Academic Publishing, 2017.
- Klonoff, Robert H., Class Actions and Other Multi-Party Litigation in a Nutshell, West Academic Publishing, 2021.
- Scarlet, Ann M., “Jury Trial Disparities between Class Actions and Shareholder Derivative Actions in State Courts”, Oklahoma Law Review, 72(2), 2020.

<국문초록>

미국의 집단소송은 연방과 주가 협력하여 운영되는 연방제라는 미국의 특성으로 인해 연방에서의 집단소송과 주에서의 집단소송이 가능하고, 소송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외부 부정적 효과의 내부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소의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국내에서의 집단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그리고 유사한 제도인 단체소송은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통해 제한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고, 일반적인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논의도 있으나 외부 부정적 효과의 내부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남소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

주제어 : 집단소송, 연방민사소송규칙, 인가 명령, 제외신고, 통지

<Abstract>

A study of the class action of the United States

*Ju, Yong Yi**

The Class action of the U.S. has the positive aspect of internalizing external negative effects of solving social problems through lawsuits, while the negative aspect is that it can stifle business activities due to overuse of lawsuits.

In Korea, class actions are implemented in limited areas through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laws, and similar systems, collective actions, are implemented in limited areas through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privacy laws, and there are discussions to introduce a general class action law, bu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t carefully because there are positive aspects such as internalizing external negative effects and negative aspects such as contraction of business activities due to overuse of lawsuits.

Keywords : Class Action,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Certification Order, Opt-out, Notice

* School of Law, Pusan National University. visyong@hanmail.net.